

경총 찾은 이낙연... 공정거래 3법, 해법없이 이견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李 “기업계와 구체적 의견교환할 것”
제계, ‘기업 경영 부담 법안’ 우려
손경식 경총회장 “제도 개선” 호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양향자 의원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업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제계 우려에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재계에서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부담 법안’이라는 취지로 우려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공정거래 3법은 지난 8월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법 개정안(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정거래 3법 관련)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계에서는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재계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와 만난 가운데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

었다. 저희들이 오늘날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만큼 여당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계 우려에도 법안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정거래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및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기업의 경영권 침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남발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논의 확대 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저해 및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 별도 관리 과정에서 이중 규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호소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립대 72%, 여전히 ‘졸업유예금’ 받는다

2018년 ‘징수 금지법’ 제정
29개 국립대 중 21곳 안 지켜
서울대, 최소 40만원 납부해야



/유토이미지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던 ‘졸업유예금’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국립대의 72%는 여전히 졸업유예금 성격의 돈을 편법으로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 중 21개 대학이 졸업 유예생들에게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졸업유예생의 수강 의무 폐지’와 ‘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를 신설했다. 졸업유예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과기대와 한경대는 10만원, 한국체대는 20만원을 졸업유예생들

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다른 대학들도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의 8~12.5% 상당을 납부하도록 했다. 강원대·경상대·목포해양대·부경대·순천대·전남대·창원대·충남대가 8%를, 경북대는 9%, 전북대·충북대·한밭대는 등록금의 10%를 내도록 했다. 금오공과대는 무려 등록금의 12.5%를 납부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사실상 졸업유예생들의 수강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상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개

정 고등교육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제도가 없다 보니 졸업을 미루려는 서울대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한 뒤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일람표’에 명시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졸업 요건을 모두 채운 학생이라도 2020년 2학기 학생 기준 최소 40만 7000원을 납부해야만 졸업을 미룰 수 있다.

한편, 강릉원주대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안동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는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중소 70% “해외출장 후 2주격리 큰 애로”

중기중앙회, 수출기업 300곳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주간의 자가 격리’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직원들의 출장 기피’를 해외출장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를 실시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가 올해 계획했던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해외출장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기업들의 71%가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 격리’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21.7%) 등도 주요 애로였다.

이런 가운데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0%로 나타났다. 활용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92.6%), ‘기업인 패스트트랙’(6.2%), ‘전세기 편성’(2.5%) 등의 순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음’(55.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복잡한 서류 절차’(19.3%), ‘통합된 창구부재’(6.7%), ‘신속하지 못한 정책 집행’(6.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인 격리 기간 단축, 위험도가 낮은 국가 방문 후 입국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등 격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기업부담 ↓

앞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

용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는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다만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규정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유리 기자

‘KDIC-학계협력프로그램’ 참여대학 모집

예보, 대학서 보험제도 등 강의

예금보험공사가 잠재 금융소비자인 대학생의 금융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DIC-학계협력프로그램’ 참여대학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KDIC-학계협력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예보 직원이 대학교를 방문해 예금보험제도, 금융권역별 주요 이슈 및 예금보험공사 채용제도 등을 강의한다.

예보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에 따라 동영상 배포를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대학교는 오는 1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